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303회 정례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른 사채발행한도 명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2021. 12.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제35조(사채발행)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제2항에 근거한 사채발행 한도를 명시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정관 개정을 통하여 법령을 초과한 사채 발행을 통제할 내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도시개발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000, 2020.9.24.)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개 도시공사는 사채발행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령을 초과한 사채 발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2020. 9.2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의안번호 제2020-438호)
 - 2020. 9.2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000호)
 - 2021. 9. 9. : 제367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제726호 사채발행 한도관련 정관개정안)

II 주요내용

- 법령에 정하는 사채발행 한도 및 사채발행 초과시 승인 절차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정관 제35조)
 - 사채발행 한도를 정관에 명시
 - 공사 정관 제35조 제1항 단서 신설
 - 세부 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근거
 -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사채 발행 초과 시 승인 절차를 정관에 명시

- 공사 정관 제35조 제3항 신설

- 세부 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근거

•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7. (생략)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생략)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생략)

Ⅲ 향후 추진계획

○ 2021.12. : 제303회 정례회 보고

○ 2021.12. : 정관 인가 및 공포

[붙임]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 35 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5조(사채 발행)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u>다만 사채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u></p> <p>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p>③ <u>공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채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